

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안내 및 참가자 모집 공고
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는 다음과 같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1. 난민전문통역인이란

-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(난민법 시행령 제8조)
- '22년부터 법무부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하여 인증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하고 있음(위촉기간 3년, 연장 가능)
- 난민전문통역인은 지역에 상관없이 인재풀(pool) 형태로 관리되며, 난민 심사 시 우선적으로 통역업무를 수행

2.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

난민심사의 통역품질 향상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시험을 통과하여 난민통역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

-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수행기관 :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

3.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절차

※ 참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순서	과정	시기	내용
1	선별시험 (온라인)	'23. 6~7월	언어별 듣기·말하기 능력 평가
2	맞춤형 교육 (온라인)	'23. 7~9월	선별시험 결과를 상·중·하로 구분하고 언어능력별로 통역 기법, 통역 윤리, 기초법률 및 지식 등 교육
3	인증시험 (온·오프라인)	'23. 10월	통역윤리, 기초법률 및 배경지식 등에 대한 필기시험, 대화통역/순차통역/시역 능력 평가를 위한 구술시험
4	위촉	'24. 1월	인증시험 합격자를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

4.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

※ 참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모집분야	담당업무	모집인원	모집언어
난민전문통역인	난민심사 관련 통역·번역	언어별 00명	제한 없음

5. 인증제 참가 자격

- 한국어와 외국어 간 통역·번역할 수 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
(다만, A·B·C·G 계열의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제외)
- 난민전문통역인 결격사유(붙임 참조)가 없는 사람

6. 인증제 참가 신청

- 신청방법 : 아래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청 이메일로 신청 기간 내 송부
 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
 - 신청서류 : ① 참가 신청서,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③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·제공 동의서, ④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(해당 외국인만)
- ※ ①, ②, ③ 서류는 필수 제출하여야 하고, D·E·F·H 계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④를 제출해야 함
- (다만, F-2(거주), F-4(재외동포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 체류자격은 ④ 제출 제외)

신청 기간 : 2023. 6. 5.(월) ~ 6. 18.(일)

※ 참가 신청자 수에 따라 접수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

신청 이메일 : refugeeinterpreting@gmail.com

문의 :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(02-2173-3977)

7. 기타

- 현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 중인 사람도 인증제에 참가하여 기존에 인증 받은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추가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.
 - 특정 언어에 참가자가 집중될 경우,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.
 - 교육 및 시험 안내 등 인증제 시행정보를 주로 e-mail로 공지·안내하니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고, e-mail 등을 적시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, e-mail 등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여 인증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[붙임] 난민전문통역인 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통역·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
- 그 밖에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